



(환경신기술)

# 환경기술평가제도(ETV) 안내



기고자 | 김기윤 환경관리공단 기술관리처 과장

## 1. 도입 배경

정부에서는 환경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산학연 협력을 통한 환경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개발된 환경기술이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되어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기술은 오염물질 성상 및 량, 계절적 영향(온도) 등 외부 환경조건에 따라 성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처음 적용하는 모험심과 실패시 따르는 부담감이 사용자들에게 크게 작용하여 신기술 사용을 기피하는 등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환경기술은 시설투자비가 대규모로 소요되는 국가적인 사업의 환경기초시설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능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 부담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수 있어 최적의 환경기술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우수한 환경기술이 개발되었다더라도 검증되지 않았을 경우 현장 적용이 어려우므로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국가차원에서 평가하여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우수한 신기술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환경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7년에 선진 외국(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의 환경기술평가제도(ETV,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를 조사하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2. 환경기술평가제도의 특징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KT, NT, 건설신기술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신기술을 지정 또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환경기술평가제도는 신청한 기술이

오염물질 성상 변화, 계절적 영향(온도)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기술의 성능이 발휘되는지 평가기관에서 직접 현장에 설치된 시설에서 3~6개월간 시험분석을 통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의 성능, 안정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현장검증하여 신기술을 지정해 주는 제도로 국가 인정제도 중에서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기술평가가 유일하게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 외국에서는 환경기술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환경기술평가(ETV)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2000. 3월에 MOU를 체결하여 인적 및 기술적 교류를 갖고 있다.

특히 UNEP에서는 200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환경기술평가제도를 국제상호인증체제 전환 및 ISO와 연계되도록 추진 중에 있고 우리나라는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공동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호주에서 한국의 ETV제도를 도입 중에 있으며, 2003년 2월에는 일본 환경성의 초청으로 한국의 ETV제도를 일본 국제세미나에 참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미 한국 ETV제도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 3. 환경신기술의 종류

환경기술평가는 환경신기술지정과 환경기술검증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류심사 환경신기술지정은 기존의 타부처 신기술 지정하는 업무와 유사하여 짧은 기간에 신기술을 지정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환경기술검증을 통한 환경신기술지정은 현장에서 검증하는 기간이 소요되므로 업무처리 기간이 서류심사에 비해 길다.

그러나 제3차(평가기관)가 평가한 결과를 환경기술검증서에 표기를 하여 발급함으로써 수

요자가 기술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신기술지정을 받는 환경신기술지정(처리기간 90일)

- 환경신기술지정서 발급(환경부장관)

나. 서류심사와 현장검증으로 신기술지정을 받는 환경기술검증(처리기간 120일, 현장검증기간 제외)

-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의 성능, 경제성 등을 현장검증을 통하여 입증 받아 신기술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환경신기술지정서 · 환경기술검증서발급(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검증보고서 발급

### 4.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신청기술을 보유한 자(또는 업체)로서 신청기술은 사후처리기술 및 사전예방기술, 청정기술등 환경기술인 경우 가능하며, 시설은 국내 현장에 설치 완료된 실증시설 또는 모형시설이 있어야 한다.(다만 실험실에 설치된 시설이나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신청할 수 없음)

### 5. 환경신기술 심사기준

환경기술평가의 기본방향은 현장적용성 · 실용성을 위주로 평가하며, 심사기준은 1차 신규성 평가를 하고, 신규성을 통과한 기술에 대하여 우수성(기술의 성능, 경제성)을 점수제로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점수(80점) 이상을 획득한 기술에 한하여 신기술지정을 해주고 있다.

또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평가심의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 6. 환경신기술 인센티브

환경신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찰 시 가점부여 및 현장시공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동 기술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환경시설공사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사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3]

-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환경시설공사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공공기관은 환경시설공사 또는 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환경신기술에 입찰가 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음.

→ 입찰가점 부여 우대조치(환경부 고시 제 2004-17호, 2004. 2. 16)

·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신기술지정 받은 기술 : 평가 총점의 100분의 1이내

· 서류심사와 현장검증으로 신기술지정 받은 기술 : 평가 총점의 100분의 2이내

○ 환경기술검증 받은 시설 규모의 10배를 공 사실적으로 인정 [공공시설의환경신기술적용 촉진에위한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466호)]

○ 조달청 입찰심사시 환경신기술 가점적용 [국가계약법령관련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47-16, 03.12.26]

- 조달청 정부시설공사의 계약 집행관련 입

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기술능력 평가

- 건설신기술 및 환경신기술 가점 적용인정 : 2점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시 신기술 배점 부여 [환경부(2001.11.17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40호, 2001.9.19시행)]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PQ 심사항목 설정

- 가점 : 0.5~1.25점 부여

○ 공공시설에의 환경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신기술 장려금제·성공불제 대상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2-105호)]

- 장려금제 :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

- 성공불제 : 설치자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한 후 성공시 설치비 지급

○ 환경신기술표지 사용가능(ET 마크)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대상

○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www.koetv.or.kr)을 통해 국내·외 홍보

○ 환경신기술 발표회 매년 개최, 환경신기술 설계편람 및 요약집 발간·배포

## 7. 환경신기술지정건수 및 현장적용 실적

환경신기술지정 건수는 2003년 12월말기준 81건이 지정되었으며, 이중 수질은 57건, 폐기물은 16건, 대기는 8건이다.

현장적용실적은 '98년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99년 10월에 최초 신기술지정이 된 이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003년말 기준 684건에 총 공사금액은 8073억원, 년 평균 1,615억원으로 현장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환경기술평가제도가 환경신기술보급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 8.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시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최장 6년)을 해주고 있으며, 또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나 환경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환경신기술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9. 현장검증비용 무료지원 및 용자

중소기업에 한하여 환경기술검증에 소요되는 평가비용 50%를 무료로 지원 해주고 있으며, 또한 환경기술검증에 소요되는 평가수수료 100% 이내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자를 해주고 있다.

### 10. 평가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신기술 안내 및 신기술자료 : [www.koetv.or.kr](http://www.koetv.or.kr)

접수처 : 환경부 환경기술과에서 수시 접수

문의처 :

◆ 환경부 환경기술과 (02-2110-6720)

◆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 (032-560-2186/8) ◀



## 「토양환경기사」 판매안내

• 정 가 : 22,000원 • 지은이 : 송영헌 著

\* 연합회 회원은 10% 할인해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2)852-2291

\* 오는 12월 첫 시험있습니다.

### 8월 환경기술인 실무교육

## 생물학적 별킹 제어 활성 슬러지 공법 현장실무기술

• 일시 | 2004년 8월 18일(수) ~ 8월 20일(금)

• 장소 | 한국산업기술협회 교육장

문의: (02)852-2291

\*자세한 내용은 본지 4페이지 참조